

의안 번호	2093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[중구 B-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]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심사보고서</b></p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5. 11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5. 11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5. 18.(목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정책사업단장 민병률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B-15 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사업명 : 중구B-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
- 위치/면적 : 유곡동 114번지 일원/66,707㎡
- 건폐율/용적률 : 249.29%/16.3%
- 세대수 : 1,361세대
- 주요내용 :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

### 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**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B-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
  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**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# 근거법규

##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제15조(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)

-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